

안전환경교육 Q&A

Q1. 안전환경교육(신규교육, 정기교육)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A1. 신규교육은 이공계열(미술대학 포함)에서 실험·실습 등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, 신규 임용된 연구원·교원·직원 등이 대상입니다.

정기교육은 신규교육(최초 1회)을 이수한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생, 연구원, 교원, 직원, 조교 등)가 대상입니다.

Q2.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내 「나의 강의실」 페이지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.

A2. 먼저 신규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확인 방법: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(rsis.snu.ac.kr) → 수료(이수)증 발급 메뉴 → 교육이력 메뉴 → 수료(이수) 여부 확인

• 상황별 안내

Q2-1.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

A2-1. 매년 2~3월, 8~9월 또는 상시 개설되는 신규교육을 먼저 이수하셔야 정기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. 신규교육 최초 1회 이수 후 매 학기 정기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.

Q2-2. 신규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

A2-2. 신규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「나의 강의실」에 정기교육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환경안전원(02-880-550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3. 안전환경교육(정기교육) 이수 여부 및 수료(이수)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A3.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온라인으로 수료(이수)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- 확인 방법: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(rsis.snu.ac.kr) → 수료(이수)증 발급 메뉴 → 교육이력 메뉴 → 수료(이수)증 출력

Q4. 정기교육(온라인강좌)을 모두 수강했는데, 「나의 강의실」 페이지에 수료(이수)로 표시 되지 않습니다.

A4. 일부 학습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 SNUON(eTL)의 「주차학습」 메뉴에서 미학습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 후 모든 학습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확인 방법: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(rsis.snu.ac.kr) → 나의강의실 → SNUON(etl) → 주차학습 → 미 학습부분 완료

Q5.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A5. 「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」 제8조(안전환경교육) 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(대학(원) 및 연구소 등)의 장은 신규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Q6. 교육을 이수했는데 수료(이수)증이 출력되지 않습니다.

A6.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정상적인 학습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시스템상 학습 이력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
- 2)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퀴즈를 모두 완료하지 않았거나 정답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
- 3) 교육을 이수한 당일인 경우 (교육 이수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1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)

※ 안전환경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. 교육 미이수자는 서울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실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